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18

발의연월일 : 2021. 4. 15.

발 의 자: 강은미·류호정·배진교

신정훈 · 심상정 · 용혜인

윤영덕 · 이동주 · 이은주

장혜영 · 조오섭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보장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 곡물자급률은 21.7%에불과한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 농경지는 1,560,000ha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면적보다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매년 15,000ha 정도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라지고 있음.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이 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필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음.

특히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1,000 m²까

지 허용하고 있는 예외조항이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필지 분할을 통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조장하고 있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이라는 이 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바로 세워 식량자급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여 농지훼손과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아울러 '사전 영농교육과정 100시간이상 이수'를 신규 농지취득의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보전이라는 이 법의 취지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4호 신설, 제11조의2 신설, 제22조제3항 신설, 제3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2항제2호·제3호"를 "제6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영농교육과정 100시간 이상 이수 증빙서류

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과징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소유한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농지 외의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아니하도록 분할할 수 없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5호 중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을 "농지를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를 "하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지의 전용 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	<u><</u> 삭 제>
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	
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	
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	
지를 소유하는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②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	<u><삭 제></u>
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u>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u>	
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	
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	

다.

④ (생략)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지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동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 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 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 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6조제2항제</u>
<u>2호</u>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교육기
관에서 발급한 영농교육과정
100시간 이상 이수 증빙서류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 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 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 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 다.

- 1. ~ 3. (생략)
-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 | <삭 제> 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 정한 경우

5. ~ 8. (생략) ② (생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과징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 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제7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 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 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 게 할 수 없다.

1. ~ 4. (생 략)

처분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로 소유한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농지 외의 농 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1천제 곱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분 할할 수 없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차) ①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u>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u>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 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 6. ~ 9. (생략)
- ② (생략)
-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 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는----

- 6. ~ 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 |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 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 삭제> 다만, 농지의 전용 허가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외에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 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받 을 수 없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